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47호 2022. 10. 31.(월)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66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고성군 공고 제2022-1669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2
고성군 공고 제2022-1697호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	52
고성군 공고 제2022-1702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2-187호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군호마을 이주단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6
고성군 고시 제2022-188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91

공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671호 상죽암군립공원 계획 (공원시설: 교통·운수시설) 변경 예고 공고	94
고성군 공고 제2022-1709호 상죽암군립공원 계획 (공원시설: 교통·운수시설) 변경 예고 공고	95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2-166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고성군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 355명→353명(감2)
- 의회사무과: 17명→20명(증3)
- 직속기관: 139명→141명(증2)

2) 직급별 정원 조정

- 4급: 4명→5명(증1)
- 4~5급: 1명→0명(감1)
- 5급: 43명→44명(증1)
- 6급(일반직): 177명→178명(증1)
- 연구사: 4명→5명(증1)

3) 직급·직렬별 세부내역: 별첨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 인사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 2) 전화: (055)670-2092, 팩스: (055) 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인사담당 [전화: (055)670-209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전)

기 관 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6	355	17	139	41	194
정 무 직	1	1	-	-	-	-
일반직 계	715	351	17	113	40	194
일반직 4급 소계	4	4	-	-	-	-
서기관	1	1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	-	-	-
일반직 4~5급 소계	1	-	-	1	-	-
기술서기관.보건.간호.의료기술	1	-	-	1	-	-
일반직 5급 소계	43	18	3	5	3	14
행정	-	-	-	-	-	-
의무	1	-	-	1	-	-
행정.사회복지	3	3	-	-	-	-
행정.공업.환경	1	1	-	-	-	-
행정.해양수산	-	-	-	-	-	-
행정.시설	4	2	2	-	-	-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	-	-	-	-	-
행정.농업.시설	10	5	1	-	2	2
행정.시설.보건	-	-	-	-	-	-
행정.농업.해양수산	2	-	-	-	-	2
행정.농업.녹지	1	1	-	-	-	-
행정.농업.녹지.사회복지	1	-	-	-	-	1
행정.공업.시설.환경	1	-	-	-	1	-
행정.농업.사회복지	1	-	-	-	-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	-	2	-	-
행정.농업.시설.보건	4	-	-	-	-	4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	-	-	-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	-	-	-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	-	-	-	1
농업.농촌지도	1	-	-	1	-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행정.농업.방송통신	1	1	-	-	-	-
행정.공업.시설	3	3	-	-	-	-
농업.녹지.시설	1	1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	-	-	-
일반직 6급 소계	177	94	3	21	8	51
행정	20	18	2	-	-	-
세무	3	2	-	-	-	1
사회복지	2	2	-	-	-	-
시설	7	6	-	-	1	-

녹지	1	1	-	-	-	-
해양수산	2	2	-	-	-	-
환경	2	2	-	-	-	-
보건진료	2	-	-	2	-	-
운전	4	4	-	-	-	-
사무운영	-	-	-	-	-	-
선박항해운영	-	-	-	-	-	-
기계운영	-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	-	-	-
행정.농업.방송통신	-	-	-	-	-	-
행정.농업	21	-	-	-	2	19
행정.전산	1	1	-	-	-	-
행정.시설	24	22	-	-	2	-
행정.공업	1	1	-	-	-	-
행정.해양수산	3	3	-	-	-	-
행정.사회복지	11	8	-	-	-	3
행정.보건	1	-	-	1	-	-
농업.녹지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	-	-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농업.농촌지도	3	-	-	3	-	-
행정.세무	7	4	-	-	-	3
행정.농업.전산	1	-	-	1	-	-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1	-	-	1	-	-
행정.농업.농촌지도	2	-	-	2	-	-
행정.농업.시설	5	1	1	2	-	1
행정.환경.공업	7	3	-	1	2	1
행정.농업.해양수산	5	-	-	-	-	5
행정.농업.녹지	3	3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5	-	-	5	-	-
행정.사회복지.보건	6	3	-	-	-	3
행정.사회복지.간호	2	-	-	-	-	2
행정.시설.보건	1	1	-	-	-	-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	-	-	-
행정.농업.사회복지	6	-	-	-	-	6
행정.농업.시설.보건	1	-	-	-	-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	-	-	-	2
행정.농업.세무	4	-	-	-	-	4
행정.공업.시설	1	-	-	-	1	-
보건.간호	2	-	-	2	-	-
일반직 7급 소계	213	111	8	31	12	51
행정	40	28	6	-	2	4

농업	3	-	-	3	-	-
세무	3	3	-	-	-	-
시설	15	9	-	-	2	4
녹지	1	1	-	-	-	-
해양수산	3	3	-	-	-	-
수의	2	-	-	2	-	-
전산	-	-	-	-	-	-
방송통신	1	1	-	-	-	-
보건	2	-	-	2	-	-
간호	1	-	-	1	-	-
보건진료	4	-	-	4	-	-
환경	1	1	-	-	-	-
공업	2	1	-	-	1	-
사회복지	8	2	-	-	-	6
의료기술	2	-	-	2	-	-
운전	6	3	1	1	1	-
숙기	1	-	1	-	-	-
사무운영	-	-	-	-	-	-
행정.농업	18	2	-	2	2	14
행정.전산	2	2	-	-	-	-
행정.시설	20	19	-	-	1	-
행정.공업	1	-	-	-	1	-
행정.환경	2	2	-	-	-	-
행정.해양수산	3	3	-	-	-	-
환경.공업	2	2	-	-	-	-
시설.방재안전	-	-	-	-	-	-
농업.녹지	1	1	-	-	-	-
시설.녹지	1	1	-	-	-	-
행정.사회복지	8	6	-	-	-	2
해양수산.시설	2	2	-	-	-	-
행정.보건	3	1	-	-	-	2
보건.약무	1	-	-	1	-	-
보건.간호	1	-	-	1	-	-
행정.세무	11	5	-	-	-	6
행정.농업.전산	2	-	-	1	-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	-	3	-	-
행정.환경.공업	4	2	-	-	1	1
행정.농업.녹지	2	2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7	-	-	4	-	3
행정.사회복지.보건	7	3	-	-	-	4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	-	-	-
행정.시설.녹지	1	-	-	-	1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공업.시설	2	2	-	-	-	-
행정.농업.시설	6	3	-	3	-	-
행정.농업.시설.보건	2	-	-	-	-	2
일반직 8급 소계	189	81	3	42	12	51
행정	26	19	1	-	3	3
농업	2	-	-	2	-	-
세무	2	2	-	-	-	-
전산	1	1	-	-	-	-
공업	5	3	-	-	2	-
시설	12	4	-	-	-	8
해양수산	3	3	-	-	-	-
방송통신	1	1	-	-	-	-
보건	10	2	-	8	-	-
간호	5	-	-	5	-	-
보건진료	6	-	-	6	-	-
환경	1	1	-	-	-	-
사회복지	10	1	-	-	-	9
의료기술	5	-	-	5	-	-
운전	4	2	1	-	1	-
속기	1	-	1	-	-	-
전기운영	2	1	-	-	1	-
행정.농업	11	1	-	3	-	7
행정.전산	1	-	-	-	-	1
행정.시설	17	17	-	-	-	-
행정.환경	2	-	-	-	1	1
행정.해양수산	2	2	-	-	-	-
행정.공업	2	1	-	-	1	-
환경.공업	2	2	-	-	-	-
시설.방재안전	2	2	-	-	-	-
행정.사회복지	3	2	-	-	-	1
행정.보건	3	-	-	1	-	2
보건.간호	4	-	-	4	-	-
간호.의료기술	1	-	-	1	-	-
행정.세무	5	1	-	-	-	4
환경.해양수산	1	1	-	-	-	-
행정.농업.세무	1	-	-	-	-	1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1	-	-	1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농업.시설	6	3	-	1	-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	-	-
행정.환경.공업	4	1	-	1	2	-
환경.공업.보건	1	-	-	-	1	-
행정.농업.녹지	2	2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6	-	-	2	-	4
행정.사회복지.보건	8	3	-	-	-	5
행정.시설.보건	1	1	-	-	-	-
행정.농업.농촌지도	2	-	-	2	-	-
행정.농업.시설.보건	1	-	-	-	-	1
일반직 9급 소계	82	43	-	7	5	27
행정	8(3)	6(1)	-	-	-	2(2)
세무	1	1	-	-	-	-
시설	4	2	-	-	-	2
보건	1	-	-	1	-	-
사회복지	13	5	-	-	-	8
공업	1	-	-	-	1	-
녹지	1	1	-	-	-	-
운전	4	4	-	-	-	-
속기	-	-	-	-	-	-
사무운영	3	1	-	1	-	1
기계운영	1	1	-	-	-	-
행정.농업	3	-	-	2	-	1
행정.시설	10	8	-	-	2	-
행정.환경	1	-	-	-	-	1
행정.세무	1	-	-	-	-	1
시설.방재안전	1	1	-	-	-	-
행정.해양수산	2	2	-	-	-	-
행정.사회복지	5	2	-	-	-	3
행정.보건	2	1	-	-	-	1
보건.간호	1	-	-	1	-	-
행정.사서	1	1	-	-	-	-
방송통신.전산	1	1	-	-	-	-
행정.환경.공업	2	1	-	-	1	-
행정.농업.녹지	3	2	-	-	1	-
행정.사회복지.보건	6	1	-	-	-	5
행정.시설.보건	1	1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2	-	-	2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공업.시설	1	1	-	-	-	-
전문경력관 소계	6	-	-	6	-	-
다군(농기계수리)	6	-	-	6	-	-
별정직 계	1	1	-	-	-	-
별정직 6급상당 소계	1	1	-	-	-	-

비서요원	1	1	-	-	-	-
연구직 계	4	2	-	1	1	-
연구사 소계	4	2	-	1	1	-
기록연구	1	1	-	-	-	-
학예연구	2	1	-	-	1	-
농업연구	1	-	-	1	-	-
지도직 계	25	-	-	25	-	-
지도관 소계	1	-	-	1	-	-
농촌지도관	1	-	-	1	-	-
지도사 소계	24	-	-	24	-	-
농촌지도	24	-	-	24	-	-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후)

기 관 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9	353	20	141	41	194
정 무 직	1	1	-	-	-	-
일반직 계	717	348	20	115	40	194
일반직 4급 소계	5	4	-	1	-	-
서기관	1	1	-	-	-	-
기술서기관	1	-	-	1	-	-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	-	-	-
일반직 4~5급 소계	-	-	-	-	-	-
기술서기관.보건.간호.의료기술	-	-	-	-	-	-
일반직 5급 소계	44	18	3	6	3	14
행정	-	-	-	-	-	-
의무	-	-	-	-	-	-
행정.사회복지	3	3	-	-	-	-
행정.공업.환경	1	1	-	-	-	-
행정.해양수산	-	-	-	-	-	-
행정.시설	4	2	2	-	-	-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	-	-	-	-	-
행정.농업.시설	10	5	1	-	2	2
행정.시설.보건	-	-	-	-	-	-
행정.농업.해양수산	2	-	-	-	-	2
행정.농업.녹지	1	1	-	-	-	-
행정.농업.녹지.사회복지	1	-	-	-	-	1
행정.공업.시설.환경	1	-	-	-	1	-
행정.농업.사회복지	1	-	-	-	-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	-	2	-	-
행정.농업.시설.보건	4	-	-	-	-	4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	-	-	-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	-	-	-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	-	-	-	1
농업.수의.농촌지도	-	-	-	-	-	-
행정.농업.방송통신	1	1	-	-	-	-
행정.공업.시설	3	3	-	-	-	-
농업.녹지.시설	1	1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	-	-	-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2	-	-	2	-	-
행정.간호.보건.의료기술	1	-	-	1	-	-
의무.간호.보건.의료기술	1	-	-	1	-	-
일반직 6급 소계	178	94	4	21	8	51
행정	21	18	3	-	-	-

세무	3	2	-	-	-	1
사회복지	2	2	-	-	-	-
시설	7	6	-	-	1	-
녹지	1	1	-	-	-	-
해양수산	2	2	-	-	-	-
환경	2	2	-	-	-	-
보건진료	2	-	-	2	-	-
운전	3	3	-	-	-	-
사무운영	-	-	-	-	-	-
선박항해운영	-	-	-	-	-	-
기계운영	-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	-	-	-
행정.농업.방송통신	-	-	-	-	-	-
행정.농업	21	-	-	-	2	19
행정.전산	1	1	-	-	-	-
행정.시설	25	23	-	-	2	-
행정.공업	1	1	-	-	-	-
행정.해양수산	2	2	-	-	-	-
행정.사회복지	11	8	-	-	-	3
행정.보건	2	-	-	2	-	-
농업.녹지	1	1	-	-	-	-
시설.녹지	1	1	-	-	-	-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	-	-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농업.농촌지도	3	-	-	3	-	-
행정.세무	7	4	-	-	-	3
행정.농업.전산	1	-	-	1	-	-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1	-	-	1	-	-
행정.농업.농촌지도	2	-	-	2	-	-
행정.농업.시설	5	1	1	2	-	1
행정.환경.공업	7	3	-	1	2	1
행정.농업.해양수산	5	-	-	-	-	5
행정.농업.녹지	3	3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4	-	-	4	-	-
행정.사회복지.보건	6	3	-	-	-	3
행정.사회복지.간호	2	-	-	-	-	2
행정.시설.보건	1	1	-	-	-	-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	-	-	-
행정.농업.사회복지	6	-	-	-	-	6
행정.농업.시설.보건	1	-	-	-	-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	-	-	-	2
행정.농업.세무	4	-	-	-	-	4
행정.공업.시설	1	-	-	-	1	-

보건.간호	2	-	-	2	-	-
일반직 7급 소계	212	109	9	31	12	51
행정	38	25	7	-	2	4
농업	3	-	-	3	-	-
세무	3	3	-	-	-	-
시설	15	9	-	-	2	4
녹지	1	1	-	-	-	-
해양수산	3	3	-	-	-	-
수의	2	-	-	2	-	-
전산	-	-	-	-	-	-
방송통신	1	1	-	-	-	-
보건	1	-	-	1	-	-
간호	2	-	-	2	-	-
보건진료	4	-	-	4	-	-
환경	1	1	-	-	-	-
공업	2	1	-	-	1	-
사회복지	10	2	-	2	-	6
의료기술	-	-	-	-	-	-
운전	6	3	1	1	1	-
속기	1	-	1	-	-	-
사무운영	-	-	-	-	-	-
행정.농업	18	-	-	2	2	14
행정.전산	2	2	-	-	-	-
행정.시설	21	20	-	-	1	-
행정.공업	1	-	-	-	1	-
행정.환경	2	2	-	-	-	-
행정.해양수산	3	3	-	-	-	-
환경.공업	2	2	-	-	-	-
시설.방재안전	-	-	-	-	-	-
농업.녹지	1	1	-	-	-	-
시설.녹지	1	1	-	-	-	-
행정.사회복지	8	6	-	-	-	2
해양수산.시설	2	2	-	-	-	-
행정.보건	3	1	-	-	-	2
보건.약무	1	-	-	1	-	-
보건.간호	2	-	-	2	-	-
행정.세무	10	4	-	-	-	6
행정.농업.전산	2	-	-	1	-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	-	3	-	-
행정.환경.공업	4	2	-	-	1	1
행정.농업.녹지	2	2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6	-	-	3	-	3

행정.사회복지.보건	8	4	-	-	-	4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	-	-	-
행정.시설.녹지	1	-	-	-	1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공업.시설	2	2	-	-	-	-
행정.농업.시설	6	3	-	3	-	-
행정.농업.시설.보건	2	-	-	-	-	2
일반직 8급 소계	190	81	3	43	12	51
행정	26	19	1	-	3	3
농업	3	-	-	3	-	-
세무	2	2	-	-	-	-
전산	1	1	-	-	-	-
공업	5	3	-	-	2	-
시설	12	4	-	-	-	8
해양수산	3	3	-	-	-	-
방송통신	1	1	-	-	-	-
보건	8	-	-	8	-	-
간호	5	-	-	5	-	-
보건진료	6	-	-	6	-	-
환경	1	1	-	-	-	-
사회복지	10	1	-	-	-	9
의료기술	5	-	-	5	-	-
운전	4	2	1	-	1	-
속기	1	-	1	-	-	-
전기운영	1	-	-	-	1	-
행정.농업	11	1	-	3	-	7
행정.전산	1	-	-	-	-	1
행정.시설	19	19	-	-	-	-
행정.환경	2	-	-	-	1	1
행정.해양수산	2	2	-	-	-	-
행정.공업	2	1	-	-	1	-
환경.공업	2	2	-	-	-	-
시설.방재안전	2	2	-	-	-	-
행정.사회복지	3	2	-	-	-	1
행정.보건	5	2	-	1	-	2
보건.간호	4	-	-	4	-	-
간호.의료기술	1	-	-	1	-	-
행정.세무	4	-	-	-	-	4
환경.해양수산	1	1	-	-	-	-
행정.농업.세무	1	-	-	-	-	1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1	-	-	1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농업.시설	6	3	-	1	-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	-	-
행정.농업.방송통신	1	1	-	-	-	-
행정.환경.공업	4	1	-	1	2	-
환경.공업.보건	1	-	-	-	1	-
행정.농업.녹지	3	3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7	-	-	3	-	4
행정.사회복지.보건	7	2	-	-	-	5
행정.시설.보건	-	-	-	-	-	-
행정.농업.농촌지도	1	-	-	1	-	-
행정.농업.시설.보건	1	-	-	-	-	1
일반직 9급 소계	82	42	1	7	5	27
행정	8	6	-	-	-	2(2)
세무	1	1	-	-	-	-
시설	4	2	-	-	-	2
보건	1	-	-	1	-	-
사회복지	13	5	-	-	-	8
공업	1	-	-	-	1	-
녹지	1	1	-	-	-	-
운전	4	4	-	-	-	-
속기	-	-	-	-	-	-
사무운영	3	-	1	1	-	1
기계운영	1	1	-	-	-	-
행정.농업	3	-	-	2	-	1
행정.시설	10	8	-	-	2	-
행정.환경	1	-	-	-	-	1
행정.세무	1	-	-	-	-	1
시설.방재안전	1	1	-	-	-	-
행정.해양수산	2	2	-	-	-	-
행정.사회복지	5	2	-	-	-	3
행정.보건	2	1	-	-	-	1
보건.간호	1	-	-	1	-	-
행정.사서	1	1	-	-	-	-
방송통신.전산	1	1	-	-	-	-
행정.환경.공업	2	1	-	-	1	-
행정.농업.녹지	3	2	-	-	1	-
행정.사회복지.보건	6	1	-	-	-	5
행정.시설.보건	1	1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2	-	-	2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공업.시설	1	1	-	-	-	-
전문경력관 소계	6	-	-	6	-	-

나군(농기계수리)	1	-	-	1	-	-
다군(농기계수리)	5	-	-	5	-	-
별정직 계	1	1	-	-	-	-
별정직 6급상당 소계	1	1	-	-	-	-
비서요원	1	1	-	-	-	-
연구직 계	5	3	-	1	1	-
연구사 소계	5	3	-	1	1	-
기록연구	1	1	-	-	-	-
학예연구	3	2	-	-	1	-
농업연구	1	-	-	1	-	-
지도직 계	25	-	-	25	-	-
지도관 소계	1	-	-	1	-	-
농촌지도관	1	-	-	1	-	-
지도사 소계	24	-	-	24	-	-
농촌지도	24	-	-	24	-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 3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5년간)

-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3]의 2022년 공무원봉급표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함.
 - 5급(상한액×80%) 1명, 6급(15호봉) 1명, 연구사(5호봉) 1명으로 추계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세출	인건비	138,909	141,687	144,520	147,411	150,359
세입	교부세	138,909	141,687	144,520	147,411	150,359

※인상률(2%) 적용

- 2023년 138,909천원 예산 소요
 - 5급(연봉제.): 1명 × 83,632천원 × 80%=66,905천원
 - 6급(15호봉): 1명 × 43,018천원
 - 연구사(5호봉): 1명 × 28,986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2021. 12. 16.>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669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기구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직급 조정

당초		변경	
부서	직급	부서	직급
기획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기획예산담당관	좌동
군정혁신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인구청년추진단	좌동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열린민원과	좌동
체육진흥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스포츠산업과	좌동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경제기업과	좌동

당초		변경	
농업기술과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과	지방농촌지도관
축산과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축산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농식품유통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농식품유통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보건소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	지방기술서기관 개방형직위
<신설>		보건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신설>		건강증진과	지방의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하이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하이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동해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동해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나. 보건진료소장 간호직렬 추가(기존: 보건진료, 변경: 보건진료+간호)

다. 분청 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 조정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 인사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 2) 전화: (055)670-2092, 팩스: (055) 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인사담당 [전화: (055)670-209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담당관”을 “담당관 및 추진단장”으로 개정한다.

제4조를 “(본청 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추진단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로 개정한다.

제4조제1호의 “민원봉사과장”을 “열린민원과장”으로 개정한다.

제4조제2호의 “체육진흥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을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을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고성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한다.

제5조제4항과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조제4항”을 “제5조제6항”으로 개정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5항을 제5조제7항으로 하고 “(보건진료)” 를 “(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으
로 개정한다.

제8조의 “담당관” 을 “담당관·추진단” 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

제25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②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열린민원과
장” 으로 한다.

③ 고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④ 고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호제1항,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제2호,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
다.

⑤ 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⑥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담당관” 을 “담당관·추진단장” 으로 한다.

⑦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을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으로 하

고, 제3조제1항 중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을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u>담당관</u> 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직무) <u>담당관 및 추진단장</u> ----- ----- -.
제4조(본청 국장· <u>담당관</u> ·과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제4조(----- <u>담당관</u> · <u>추진단장</u> -----) ----- --.
1. ----- <u>민원봉사과장</u> ----- -----.	1. ----- <u>열린민원과장</u> ----- -----.
2. ----- <u>체육진흥과장</u> ----- -----.	2. ----- <u>스포츠산업과장</u> ----- -----.
3. ----- <u>일자리경제과장</u> ----- -----.	3. ----- <u>경제기업과장</u> ----- -----.
4. <u>군정혁신담당관</u> : <u>군정혁신담당관</u>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u>기획예산담당관</u> : <u>기획예산담당관</u>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u>기획감사담당관</u> : <u>기획감사담당관</u>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u>인구청년추진단</u> : <u>인구청년추진단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제5조(직속기관 소장·과장 등의 직급) ②농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농업기술과장</u> 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축산과장</u> 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	제5조(직속기관 소장·과장 등의 직급) ②농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농업기술과장</u> 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축산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

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③ 고성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신 설>

-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분장사무 등) ① 본청 담당관·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

- ②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

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 ③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⑥ -----

-----.

- ⑦ -----
---(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

제8조(분장사무 등) ① -----담당관·추진단-----
-----.

- ② -----담당관·추진단-----

소, 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현 행)

읍·면장의 직급 (제7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고성읍행정복지센터	고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삼산면사무소	삼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일면사무소	하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이면사무소	하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리면사무소	상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가면사무소	대가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현면사무소	영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오면사무소	영오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천면사무소	개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구만면사무소	구만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회화면사무소	회화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암면사무소	마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해면사무소	동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류면사무소	거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안)

읍·면장의 직급 (제7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고성읍행정복지센터	고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삼산면사무소	삼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일면사무소	하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이면사무소	하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리면사무소	상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가면사무소	대가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현면사무소	영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오면사무소	영오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천면사무소	개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구만면사무소	구만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회화면사무소	회화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암면사무소	마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해면사무소	동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류면사무소	거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현 행)

본청 담당관·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
(제8조 관련)

1. 담당관

부서	분장사무
군정혁신 담당관	1. 군민의식개혁, 혁신,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2. 군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주민참여, 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4. 공모사업 총괄 5. 인구정책, 청년정책,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 담당관	1. 군정 기획조정·분석평가·지시사항, 의회업무 총괄, 제안제도 및 시책토론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경영개발 및 수익에 관한 사항 4. 본청 및 산하기관·단체(법령상 감독의무)에 대한 감사와 상급 기관단체 및 기관의 수감, 직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6.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 통계조사·연보발간, 행정소송·심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국

부서	분장사무
행 정 과	1. 조직·인사업무, 읍·면 지도감독, 상훈, 선거, 행정구역 조정, 주민여론·동향관리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3. 의식·행사, 복무·직장보수교육, 후생복리, 기록관 운영, 공인,보안·비상대책, 군민의 날 행사(문화체육부분 제외) 및 군민상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5. 전산정보·통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외향우, 출향인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 무 과	1. 세수증대 종합기획, 도·군세 부과 및 세무조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 도·군세 징수 및 납부홍보, 군 금고 감독, 세외수입 총괄, 군 수입증지 3. 세출예산의 경리·결산, 도급계약, 유가증권 수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물품출납보관,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6. 체납징수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취약계층 및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p>복지지원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다문화에 관한 사항 4.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p>교육청소년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발전기금 등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 보육·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p>민원봉사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행정 종합기획추진과 민원제도개선,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사무 지도·감독 및 외국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토지소유권, 토지등기축탁 등과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등록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6.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8.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국

부서	분장사무
문화관광과	1.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종교업무, 문화·예술진흥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날 행사(문화 부문)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기획·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고성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	1.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골프장 등)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 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과	1. 환경보전종합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환경공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청소행정의 총괄기획·조정, 폐기물 관리·지도·감독,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1. 수산진흥 종합기획, 어선, 어민후계자, 어로시설, 수산물 유통, 어민 교육,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2. 양식어장, 어업피해예방,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공유수면 관리(구거 제외), 유·도선(내수면)장 관리 4. 연안관리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어촌 개발 및 스마트 양식에 관한 사항 6. 해난안전에 관한 사항

녹지공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경 및 가로수 식재관리, 조림, 양묘사업, 사방 및 임도 시설, 전원화사업, 산촌개발사업, 산림내 토·사석 채취 허가, 임업단체 지도 감독 2.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산불 방지, 산지 정화 3. 등산로 개발, 산악박물관, 휴양림 조성 등 산지자원개발 및 소득에 관한 사항 4. 도립공원, 도시·녹지공원 조성계획 및 조성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4. 산업건설국

부서	분장사무
일자리경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통상·수출업무 총괄, 물가안정, 저축, 상공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석유·가스·전기·계량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특구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지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9. 조선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10. 발전소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해·재난예방 비상대책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방재시설물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에 관한 사항 5.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 주민불편신고에 관한 사항 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도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사업, 온천개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사업장 관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용수개발 및 농로개설, 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5. 도로 점·사용에 관한 사항 6. 하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건축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행정, 건축관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과 추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지, 산지전용 허가·신고 5. 개발행위 인·허가 6. 각종 인·허가 업무(복합민원 등)

5. 농업기술센터

부서	분장사무
농촌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용·보존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및 농촌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6.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11. 지역행복생활권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3. 각종 직접지불제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환경개선·실태조사·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5. 과수화훼 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채소특작 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적응실증시험포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축 산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분뇨처리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동물복지 및 곤충산업 관리 3. 가축전염병 관리, 예방주사, 안전축산물 생산 4. 축산위생업소 허가·신고 관리, 공수의 관리, 미생물 배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축산혁신 공모사업,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조사료 생산 및 기계장비 지원, 낙농육성에 관한 사항 7. 한우 고급육 생산, 개량사업, 축산업 허가·등록 관리 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양계 육성 사업 9.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및 지도
<p>농식품 유통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산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가공 상품화 기술개발 및 농식품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식품제조가공)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농식품 가공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촌생활문화사업의 계획 및 평가,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양곡관리 및 수급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출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안)

본청 담당관·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

(제8조 관련)

1. 담당관·추진단

부서	분장사무
<p>기획예산 담당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 기획조정·분석평가·지시사항, 의회업무 총괄, 제안제도 및 시책토론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경영개발 및 수익에 관한 사항 4. 본청 및 산하기관·단체(법령상 감독의무)에 대한 감사와 상급 기관단체 및 기관의 수감, 직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6.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 통계조사·연보발간, 행정소송·심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 군민의식개혁, 혁신,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8. 공모사업 총괄
<p>인구청년 추진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정책, 인구증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정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5.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재외향우, 출향인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국

부서	분장사무
행 정 과	1. 조직·인사업무, 읍·면 지도감독, 상훈, 선거, 행정구역 조정, 주민여론·동향관리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3. 의식·행사, 복무·직장보수교육, 후생복지, 기록관 운영, 공인,보안·비상대책, 군민의 날 행사(문화체육부분 제외) 및 군민상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5. 전산정보·통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분권, 주민참여,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재 무 과	1. 세수증대 종합기획, 도·군세 부과 및 세무조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 도·군세 징수 및 납부홍보, 군 금고 감독, 세외수입 총괄, 군 수입증지 3. 세출예산의 경리·결산, 도급계약, 유가증권 수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물품출납보관,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6. 체납징수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취약계층 및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p>복지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다문화에 관한 사항 4.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p>교육청소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발전기금 등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 보육·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p>열린민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행정 종합기획추진과 민원제도개선,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사무 지도·감독 및 외국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토지소유권, 토지등기촉탁 등과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등록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6.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8.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국

부서	분장사무
문화관광과	1.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종교업무, 문화·예술진흥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날 행사(문화 부문)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기획·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고성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야사 복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과	1.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골프장 등)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 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과	1. 환경보전종합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환경공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청소행정의 총괄기획·조정, 폐기물 관리·지도·감독,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1. 수산진흥 종합기획, 어선, 어민후계자, 어로시설, 수산물 유통, 어민 교육,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2. 양식어장, 어업피해예방,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공유수면 관리(구거 제외), 유·도선(내수면)장 관리 4. 연안관리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어촌 개발 및 스마트 양식에 관한 사항 6. 해난안전에 관한 사항
녹지공원과	1. 조경 및 가로수 식재관리, 조림, 양묘사업, 사방 및 임도

	<p>시설, 전원화사업, 산촌개발사업, 산림내 토·사석 채취 허가, 임업단체 지도 감독</p> <p>2.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산불 방지, 산지정화</p> <p>3. 등산로 개발, 산악박물관, 휴양림 조성 등 산지자원개발 및 소득에 관한 사항</p> <p>4. 도립공원, 도시·녹지공원 조성계획 및 조성사업·관리에 관한 사항</p> <p>5.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	--

4. 산업건설국

부서	분장사무
경제기업과	<p>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p> <p>2. 통상·수출업무 총괄, 물가안정, 저축, 상공에 관한 사항</p> <p>3.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4. 노동조합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p> <p>5. 석유·가스·전기·계량에 관한 사항</p> <p>6.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p> <p>7. 산업단지·특구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p> <p>8. 중소기업 지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p> <p>9. 조선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p> <p>10. 발전소 지원에 관한 사항</p>
안전관리과	<p>1.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해·재난예방 비상대책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p> <p>2. 방재시설물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p> <p>3.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p> <p>4. 민방위에 관한 사항</p> <p>5.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 주민불편신고에 관한 사항 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9.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사업, 온천개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6. 고속철도 건설 및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사업장 관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용수개발 및 농로개설, 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5. 도로 점·사용에 관한 사항 6. 하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건축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행정, 건축관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과 추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지, 산지전용 허가·신고 5. 개발행위 인·허가 6. 각종 인·허가 업무(복합민원 등)

5. 농업기술센터

부서	분장사무
농촌정책과	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용·보존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및 농촌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6.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11. 지역행복생활권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과	1.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3. 각종 직접지불제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환경개선·실태조사·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5. 과수화훼 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채소특작 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적응실증시험포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축 산 과	1.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분뇨처리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동물복지 및 곤충산업 관리 3. 가축전염병 관리, 예방주사, 안전축산물 생산 4. 축산위생업소 허가·신고 관리, 공수의 관리, 미생물 배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축산혁신 공모사업,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조사료 생산 및 기계장비 지원, 낙농육성에 관한 사항 7. 한우 고급육 생산, 개량사업, 축산업 허가·등록 관리 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양계 육성 사업 9.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및 지도
<p>농식품 유통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산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가공 상품화 기술개발 및 농식품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식품제조가공)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농식품 가공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촌생활문화사업의 계획 및 평가,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양곡관리 및 수급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출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의 조직의 직급 불부합 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697호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하여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적용대상), 제4조(시설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6조(적용제외), 제7조(신고 등)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의견 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민원봉사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 2) 전화: (055)670-2732, 팩스: (055) 670-21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위생담당(전화: 055-670-27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 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축제를 말한다.
2. “특정장소”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법인, 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2. 식품소분·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 가공 하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4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3호, 제3조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고성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3호라목은 제외한다.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호 관련)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 등

- 가. 작업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식품에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또는 판매장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 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 나. 악취·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장 또는 판매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소분·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원재료 및 제품을 기준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바.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3호 관련)

1. 영업장

-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도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4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축물로 분리 또는 구획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다. 건물의 구조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 라.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식품()영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HP :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	
	영업기간		영업장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6) 계약서(규칙 제5조 관련)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사항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HP :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	
	영업기간		영업장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6)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7) 계약서(규칙 제5조 관련)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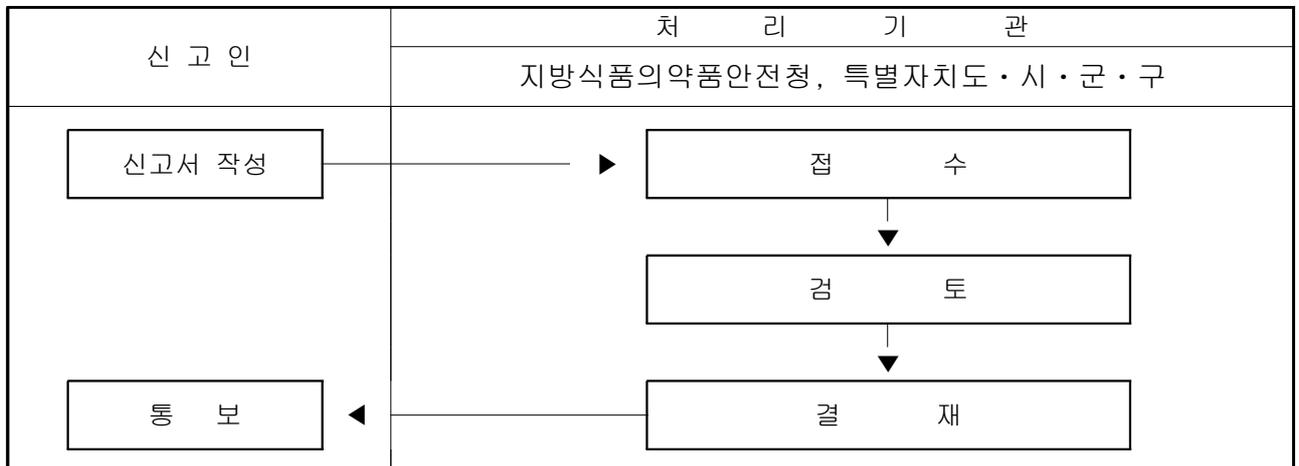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영업의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남/여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고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수수료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6. 2. 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폐업신고) 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702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성군 지역치안협의의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사무 담당부서 명칭 변경

- “ 경무과장 ” → “ 생활안전교통과장 ” (안 제6조제5항)
- “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관 ” → “ 생활안전교통과장 ” (제11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 행정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 2) 전화: (055)670-2104, 팩스: (055) 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055)670-210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경무과장”을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관”을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협의회 구성) ① ~ ④ (생 략)</p> <p>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성경찰서 <u>경무과장</u>으로 한다.</p> <p>⑥ (생 략)</p>	<p>제6조(협의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 음)</p> <p>⑤ ----- ----- <u>생활안전교통과장</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실무협의회) ① · ② (생 략)</p> <p>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으로 한다.</p> <p>1. (생 략)</p> <p>2. 경찰서 <u>경무과장</u> 및 <u>청문감사관</u></p> <p>3. ~ 5. (생 략)</p> <p>④ (생 략)</p>	<p>제11조(실무협의회) ① · ② (현행과 같 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생활안전교통과장</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경상남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2022. 2.23 훈령 제271호

제20조 【생활안전과】 ① 생활안전과에는 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를 두고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 생활안전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 기획 업무

가.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조정·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나. 범죄예방 관련 예산 편성·운영

다. 범죄예방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법령 사무 총괄

라. 시기별(특별방법) 범죄예방활동 기획 및 하절기 경찰관서 운영

마. 범죄예방관련 활동 평가(성과평가 포함)

바. 계·과 서무 업무(인사·포상·승급 등)와 타부서와 연계된 기타 업무(회의 등)

2. 범죄예방 운영 업무

가. 범죄예방진단팀(CPO) 기획 및 운영

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 및 운영

다.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예방강화구역 운영

라. 범죄예방을 위한 통계 관리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마. 범죄예방순찰 기획 및 운영

3. 범죄예방 협력 업무

가. 협력방법에 관한 기획·연구 및 협업

나. 경비업 관련업무

다. 범죄예방 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협업

라. 자치단체와 범죄예방사업 협업 및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방범체계 구축

마. 범죄예방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

바.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2-187호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군호마을 이주단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17-166호(2017. 10. 18.)로 최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48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군호마을 이주단지)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0. 26.

고 성 군 수

1.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군호마을 이주단지) 변경 결정 조서: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군호마을 이주단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㉔	군호마을 이주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형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48번지 일원	108,331.9	-	108,331.9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01.07.)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8,331.9	-	108,331.9	100.0		
주거 용지	소계	48,263.1	-	48,263.1	44.6		
	단독주택용지	37,541.1	-	37,541.1	34.7		
	공동주택용지(세입자)	772.0	-	772.0	0.7		
	공동주택용지(사택)	8,477.0	-	8,477.0	7.8		
	기존주택(존치)	1,473.0	-	1,473.0	1.4		
근린생활시설		1,318.3	-	1,318.3	1.2		
기반 시설	소계	58,750.5	-	58,750.5	54.2		
	도로	28,605.6	-	28,605.6	26.4		
	주차장	1,874.7	-	1,874.7	1.7	노외주차장 4개소	
	공원	4,646.8	-	4,646.8	4.3	소공원 3개소	
	녹지	9,836.8	-	9,836.8	9.1	경관녹지 5개소	
	보행자도로	723.1	-	723.1	0.7		
	하수도	430.1	-	430.1	0.4		
	저류지	992.5	-	992.5	0.9		
	마을회관	363.3	-	363.3	0.3		
	기정	하이문화센터	6,581.0	-	6,581.0	6.1	
	변경	문화 및 공공시설					
	공공시설		314.6	-	314.6	0.3	
	하이면복지회관(존치)		4,382.0	-	4,382.0	4.0	복지회관 존치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5	2,972 (75)	30,454.1 (1,125.4)	-	-	-	19	2,425 (75)	26,050.9 (1,125.4)	6	547	4,403.2
중로	2	622 (75)	11,206.6 (1,125.4)	-	-	-	1	497 (75)	9,680.3 (1,125.4)	1	125	1,526.3
소로	23	2,350	19,247.5	-	-	-	18	1,928	16,370.6	5	422	2,876.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497 (75)	덕호리 1348	덕호리 1348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25	덕호리 1344	덕호리 1344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7	덕호리 1347	덕호리 1347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428	덕호리 1345	덕호리 1345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8	덕호리 1345	덕호리 1345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08	덕호리 1346	덕호리 1346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60	덕호리 1346	덕호리 1346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60	덕호리 1346	덕호리 1346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108	덕호리 1346	덕호리 1346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96	덕호리 1346	덕호리 1346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43	덕호리 1347	덕호리 1347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24	덕호리 1347	덕호리 1347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39	덕호리 1349	덕호리 1349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75	덕호리 1349	덕호리 1349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51	덕호리 1349	덕호리 1349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44	덕호리 1349	덕호리 1349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44	덕호리 1349	덕호리 1349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48	덕호리 1349	덕호리 1349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176호 (2016.10.19)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81	덕호리 1350	덕호리 1350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176호 (2016.10.19)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65	덕호리 1347	덕호리 1347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176호 (2016.10.19)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98	덕호리 1344	덕호리 1344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3	2	6	특수 도로	26	덕호리 1323-11	덕호리 1323-11	보행자 전용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3	3	6	특수 도로	26	덕호리 1323-5	덕호리 1323-5	보행자 전용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소로	3	4	6	특수 도로	23	덕호리 1320-6	덕호리 1320-6	보행자 전용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176호 (2016.10.19)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49	덕호리 1320-11	덕호리 1320-11	보행자 전용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6-176호 (2016.10.1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로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874.7	-	1,874.7		
기정	①	주차장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6번지 일원	243.8	-	243.8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②	주차장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1-1번지 일원	593.2	-	593.2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③	주차장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1-5번지 일원	592.3	-	592.3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④	주차장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17번지	445.4	-	445.4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836.8	-	9,836.8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19번지 일원	6,816.6	-	6,816.6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②	녹지	경관녹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1번지 일원	1,852.0	-	1,852.0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③	녹지	경관녹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2번지 일원	852.3	-	852.3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2-2번지 일원	193.9	-	193.9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⑤	녹지	경관녹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42-3번지 일원	122.0	-	122.0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646.8	-	4,646.8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1-4번지 일원	1,933.3	-	1,933.3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②	공원	소공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42-1번지 일원	990.8	-	990.8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기정	③	공원	소공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1,722.7	-	1,722.7	고성군 고시 제2016-5호 (2016.1.7)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단독	계	39,014.1			39,014.1	기존주택(촌치) 면적(1,473m ²) 포함
	①	1334.3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1번지 일원	330.8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2번지 일원	330.4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3번지 일원	333.4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4번지 일원	339.7	
	②	991.0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7번지 일원	330.4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8번지 일원	329.8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9번지 일원	330.8	
	③	1,674.7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1번지 일원	347.3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2번지 일원	332.4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3번지 일원	332.1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4번지 일원	331.7	
			-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5번지 일원	331.2	
	④	1,586.0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7번지 일원	397.0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8번지 일원	396.0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9번지 일원	397.4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10번지 일원	395.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단독	⑤	1,781.3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12번지 일원	445.9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13번지 일원	447.4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14번지 일원	446.0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15번지 일원	442.0	
	⑥	2,743.1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4-1번지 일원	512.2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4-2번지 일원	445.9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4-3번지 일원	446.5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4-4번지 일원	445.8	
			-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4-5번지 일원	446.4	
			-6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4-6번지 일원	446.3	
	⑦	2,681.8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5-1번지 일원	447.4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5-2번지 일원	446.8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5-3번지 일원	446.4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5-4번지 일원	447.2	
			-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5-5번지 일원	446.2	
			-6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5-6번지 일원	447.8	
	⑧	2,677.5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6-1번지 일원	446.4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6-2번지 일원	445.6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6-3번지 일원	446.2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6-4번지 일원	445.9	
			-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6-5번지 일원	445.7	
			-6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6-6번지 일원	447.7	
	⑨	1,339.4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7-1번지 일원	446.4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7-2번지 일원	446.0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7-3번지 일원	447.0		
⑩	1,693.7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8-1번지 일원	565.2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8-2번지 일원	562.5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8-3번지 일원	566.0		
⑪	1691.8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9-1번지 일원	565.1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9-2번지 일원	561.3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9-3번지 일원	565.4		
⑫	2,826.6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0-1번지 일원	570.7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0-2번지 일원	561.9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0-3번지 일원	562.2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0-4번지 일원	561.7		
		-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0-5번지 일원	570.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단독	⑬	1,655.0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12번지 일원	330.9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13번지 일원	330.5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14번지 일원	330.8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15번지 일원	331.1	
			-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3-16번지 일원	331.7	
	⑭	2,333.9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3-1번지 일원	496.6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3-2번지 일원	447.4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3-3번지 일원	446.1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3-4번지 일원	446.2	
			-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3-5번지 일원	497.6	
	⑮	2,890.7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4-1번지 일원	562.4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4-2번지 일원	562.0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4-3번지 일원	562.1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4-4번지 일원	562.5	
			-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4-5번지 일원	641.7	
	⑯	1,794.2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5-1번지 일원	562.8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5-2번지 일원	562.4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5-3번지 일원	669.0	
	⑰	1,129.5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6-1번지 일원	564.3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6-2번지 일원	565.2	
	⑱	1,135.3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7-1번지 일원	566.8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7-2번지 일원	568.5		
⑲	1,135.7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8-1번지 일원	567.6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8-2번지 일원	568.1		
⑳	2,914.4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41-1번지 일원	470.3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462-4번지 일원	553.0	기존주택	
		-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462-3번지 일원	920.0	기존주택	
		-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41-3번지 일원	456.6		
		-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41-2번지 일원	514.5		
㉑	1,004.2	-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43-1번지 일원	512.1		
		-2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43-2번지 일원	492.1		

2)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공동	계	9,249.0		9,249.0	
	①	8,477.0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17번지 일원	8,477.0	
	②	772.0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18번지 일원	772.0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근생	계	1,318.3		1,318.3	
	①	849.8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2-3번지 일원	849.8	
	②	357.8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20-16번지 일원	357.8	
	③	110.7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50-1번지 일원	110.7	

4)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가) 공공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공공	계	5,059.9		5,059.9	
	①	314.6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1-2번지 일원	314.6	
	②	363.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1-3번지 일원	363.3	
	③	4,382.0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452-1번지 일원	4,382.0	

나) 문화체육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문화 → 공공· 문화	①	6,581.0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216-2번지 일원	6,581.0	

다) 하수도(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하수도	①	430.1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32-1번지 일원	430.1	

라.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단독	①~②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20% 이하	
		높이	• 2층 이하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	①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근생	②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근생	③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3)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	①~②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대시설 주택법 제2조제9호의 복지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4)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문화 → 공공 · 문화	①	용도	허용 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	① ~ ③	허용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 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하수도	①	허용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하수 등 처리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 소공원1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m ²)		구성비 (%)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1,933.3	-	100.0	
시설소계		372.0	-	19.2	
기반시설	진입로, 산책로, 연결로, 광장	270.0	-	14.0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102.0	-	5.2	
기타시설	녹지 및 기타	1,561.3	-	80.8	
공원시설 법적기준 (20% 이하)	(372.0m ² / 1,933.3m ²) × 100% = 19.2%				

나) 세부시설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고	
계			1,933.3	-		
1. 기반시설	소계		270.0	-		
	1-1	진입로	하이면 덕호리 1331-4번지 일원	100.0	-	
	1-2	진입로	하이면 덕호리 1331-4번지 일원	9.0	-	
	1-3	산책로	하이면 덕호리 1331-4번지 일원	47.0	-	
	1-4	산책로	하이면 덕호리 1331-4번지 일원	76.0	-	
	1-5	연결로	하이면 덕호리 1331-4번지 일원	28.0	-	
	1-6	광 장	하이면 덕호리 1331-4번지 일원	10.0	-	
2. 유희시설	소계		102.0	-		
	2	어린이놀이터	하이면 덕호리 1331-4번지 일원	102.0	-	
3. 기타시설	소계		1,561.3	-	의자, 열주 등	
	3	녹지 및 기타	하이면 덕호리 1331-4번지 일원	1,561.3		-

다) 도로시설 세부조서

등급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151.5	260.0				
진입로	소계			109.0				
	1	2.5	40.0	10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2	1.5	6.0	9.0	진입로	공원경계	진입로1	
산책로	소계			123.0				
	1	1.5	31.3	47.0	산책로	진입로1	진입로1	
	2	1.5	50.9	76.0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1	
연결로	소계			28.0				
	1	1.2	23.3	28.0	연결로	공원경계	진입로1	

2) 소공원2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구성비 (%)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990.8	-	100.0		
시설소계		164.0	-	16.5		
	기반시설	진입로	131.0	-	13.2	
	유희시설	체력단련장	33.0	-	3.3	
기타시설	녹지 및 기타	826.8	-	83.5		
공원시설 법적기준 (20% 이하)	(164.0㎡ / 990.8㎡) × 100% = 16.5%					

나) 세부시설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고
계			990.8	-	
1. 기반시설	소계		131.0	-	
	1	진입로	하이먼 덕호리 1342-1번지 일원	131.0	-
2. 유희시설	소계		33.0	-	
	2	체력단련장	하이먼 덕호리 1342-1번지 일원	33.0	-
3. 기타시설	소계		826.8	-	음수대, 의자, 파고라 등
	3	녹지 및 기타	하이먼 덕호리 1342-1번지 일원	826.8	

다) 도로시설 세부조서

등급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29.0	131.0				
진입로	소계			131.0				
	1	4.0 ~ 5.0	29.0	131.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3) 소공원3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구성비(%)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1,722.7	-	100.0		
시설소계		300.0	-	17.4		
	기반시설	산책로, 연결로, 진입로, 광장	180.0	-	10.4	
	휴양시설	휴게공간	79.0	-	4.6	
	교양시설	야외학습장	38.0	-	2.2	
	편익시설	음수장	3.0	-	0.2	
기타시설	녹지 및 기타	1,422.7	-	82.6		
공원시설 법적기준 (20% 이하)	$(300.0\text{㎡} / 1,722.7\text{㎡}) \times 100\% = 17.4\%$					

나) 세부시설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고
계				1,722.7	-	
1. 기반시설	소계			180.0	-	
	1-1	산책로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123.0	-	
	1-2	연결로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4.0	-	
	1-3	연결로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4.0	-	
	1-4	연결로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4.0	-	
	1-5	연결로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2.0	-	
	1-6	연결로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2.0	-	
	1-7	진입로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22.0	-	
	1-8	광장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19.0	-	
2. 휴양시설	소계			79.0	-	
	2	휴게공간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79.0	-	
3. 교양시설	소계			38.0	-	
	3	야외학습장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38.0	-	
4. 편의시설	소계			3.0	-	
	4	음수장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3.0	-	
5. 기타시설	소계			1,422.7	-	
	5	녹지 및 기타	하이면 덕호리 1339-1번지 일원	1,422.7	-	등의자

다) 도로시설 세부조서

등급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112.2	161.0				
산책로	소계		81.7	123.0				
	1	1.5	81.7	123.0	산책로	진입광장	음수장	
연결로	소계		15.7	16.0				
	1	1.0	3.7	4.0	연결로	산책로1	휴게쉼터	
	2	1.0	3.7	4.0	연결로	산책로1	휴게쉼터	
	3	1.0	3.7	4.0	연결로	산책로1	휴게쉼터	
	4	1.0	2.3	2.0	연결로	산책로1	야외학습장	
	5	1.0	2.3	2.0	연결로	산책로1	야외학습장	
진입로	소계		14.8	22.0				
	1	1.5	14.8	22.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	

고성군 고시 제2022-188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27.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1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신월리 546-6	고성읍 신월로 112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신월리)을 이용하여 신월로로 명명	
2	마암면 보전리 874-3, 874-4	마암면 보전1길 21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마암면 보전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3	동해면 내산리 325-4, 320-1	동해면 조선특구로 1945-10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동해면 조선특구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4	동해면 장좌리 1568-1	동해면 구절로 452-39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동해면 구절산이 위치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5	거류면 신용리 2021	거류면 신용8길 42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거류면 신용리)을 이용하는 여덟번째 도로	
6	거류면 송산리 1379-11	거류면 은월1길 127-51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거류면 은월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7	고성읍 신월리 620-2	고성읍 신월4길 20-8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신월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8	삼산면 병산리 535-2	삼산면 병산3길 356-142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병산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9	영오면 오서리 1247-1	영오면 대가로 2102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대가면)을 이용하여 대가로로 명명	
10	구만면 용와리 478	구만면 구만로 619-170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구만면)을 이용하여 구만로로 명명	
11	삼산면 미룡리 57	삼산면 공룡로 2172-6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12	동해면 내산리 241-1, 242, 242-1	동해면 조선특구로 1973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동해면 조선특구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13	동해면 장기리 산60-15	동해면 구절로 692-1	2022.10.27.	건물번호부여신청	동해면 구절산이 위치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마암면	보전1길 21	2022.10.27.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고성군 공고 제2022-1671호

공인 폐기 공고

「고성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에 따라 폐기할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21.

고 성 군 수

- 1. 공인 폐기 사유: 공인 사고(분실)
- 2. 공인 폐기일: 2022. 10. 21.
- 3.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관리부서
폐기공인	개천면청광보건 진료소장		한글전서체 1.5cm×1.5cm	보건소 (개천면 청광보건 진료소)

고성군 공고 제2022-1709호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1.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53번지의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31.

고 성 군 수

1. 개요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53번지
- 면적: 17,893㎡
-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참조

2. 열람기간: 2022. 10. 31. ~ 2022. 11. 15.

3. 열람장소: 경상남도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6)

4. 관계서류: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도시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